

I.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1.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주요 서비스 안내

- 공제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제출하기
 - 간소화 자료
 - 공제신고서

부가 서비스 안내

- 동영상 따라하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 키워드 연말정산
- FAQ
- 근로자용 매뉴얼

이용방법 문의

서비스 이용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 ☎ 126 - 1 - 5
-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문의 : ☎ 126 - 1 - 3 - 2
- 연말정산 세법상담 : ☎ 126 - 2 -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일괄제공 확인(동의) 간소화자료 제출 예상세액 계산 공제신고서작성

귀속년도: 2021년 전체월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번에 내려받기 한번에 인쇄하기 제공동의 현황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보험료 (Insurance)	의료비 (Medical Expenses)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신용카드 (Credit Card)	직불카드 등 (Debit Card)
395,640	2,485,160	1,711,200	5,363,480	6,515,833	27,712,179	2,786,350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Pension Savings)	주택자금/월세액 (Housing Funds/Monthly rent)	주택미론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장기장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LT Investment savings/Venture investment trust)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기부금 (Donation)
336,020	7,850,000	11,225,564	2,400,000	6,000,000	3,600,000	220,000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기본내역 상세내역확인 PDF다운로드 인쇄하기 현금영수증 안내

인별 선택	사용자	종류	공제대상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김국세	일반거과	234,5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김국세	전통시장거과	70,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김국세	대중교통거과	15,4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김국세	도서,공연비등거과	16,020
인별합계			336,020 원
선택 4 건			선택합계 336,020 원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 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대상
 -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를 확인되는 것만 해당)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 선택합니다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 ①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 * 간소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엔 간소화 자료를 재선택 후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으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이 뜨면 근무처를 선택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근무처 정보가 뜨지 않으니 회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총급여는 근무처에서 입력한 금액이 조회됩니다.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예상세액계산하기 등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액을 입력할 수 있으며, 근무처 선택 목록에서 해당없음을 선택하고 총급여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③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 공제신고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에 작성했던 공제신고서를 조회하려면 ‘작성한 공제신고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3. 부양가족 확인하기

≡ 조회/발급
연말정산
바로가기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Step.01
부양가족 입력
Step.02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현재 조회되고 있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대상자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입니다.
- 명단에 있는 부양가족 외에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또는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눌러 개별적으로 추가하고,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폼북

부양가족 입력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부양가족 추가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선택삭제

관계	내외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	기본 공제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기본)	출산입양	
<input type="checkbox"/>	소속자 본인	내국인		N	Y	N	N	N	N	N	N	N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의 직계존속	내국인		N	Y	N	N	Y	장애인복지법이 다른	N	N	N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내국인		Y	N	N	N	N	N	N	N	N
<input type="checkbox"/>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내국인		N	Y	N	N	N	N	Y	N	N
<input type="checkbox"/>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내국인		N	N	N	N	N	N	Y	N	N
<input type="checkbox"/>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내국인		N	Y	N	N	N	N	N	N	선택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Y'로 선택하시고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장 후 다음아동

-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있는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 관계는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에 설정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만약 자동 입력된 정보가 다른 경우 수정합니다.
-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할 수 있으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부양가족이 추가됩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과의 관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의 공제여부는 모두 ‘N’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Y’로 선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족일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4.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처음하면 돌아가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3 간편제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Step.01
부양가족 입력

Step.02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작성 완료한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의 지출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공제항목은 추가하거나 새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2021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2020.12.31. 이전 지출한 의
 료비 해당분이 포함된 경우 실손의료보험금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수정 가능)
 • 소득·세액 공제액은 「예상세액 결과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완료한 공제신고서는 종이로 출력 또는 PDF로 내려받아 제출하거나, 회사가 근로자 기초 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제출(간편제출하기)할 수 있습니다.

남 | 새로 작성하기 |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 간편제출하기

기타서류 첨부 |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 공제신고서 출력 | 예상세액 결과보기

●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공제 신고서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의료비 지급명세	기부금 명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	-------------------------	-------------	-----------	--------------------

● 기본사항

소득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input type="checkbox"/> 세대주 <input type="checkbox"/> 세대원	국적	대한민국(국적코드: KR)
근무기간	2021.01.01 ~ 2021.12.31	감면기간	
거주구분	<input type="checkbox"/> 거주자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	거주지국	대한민국(거주지코드: KR)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input type="checkbox"/> 전년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변동	분납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월원징수세액 선택	<input type="checkbox"/> 120% <input type="checkbox"/> 100% <input type="checkbox"/> 80%		

- 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스톱으로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내용과 부속명세서를 선택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 ② 기본사항 등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입력할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합니다.
- ③ 수정사항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간편제출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1. 간편제출하기)
 * 간편제출은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회수하면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 수정사항이 없고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를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출력’을 선택합니다.
- ④ ‘예상세액 결과보기’는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계산한 예상세액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4-1. 간편제출하기

-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하기 팝업이 뜹니다.
-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제출 동의를 클릭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제신고서가 온라인으로 제출됩니다.
- 회수 및 이력보기는 [조회/발급-편리한연말정산 바로가기-제출하기-회수 및 제출이력]을 클릭합니다.

5. 기본사항 확인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Step.01 기본사항 입력
Step.02 부양가족 입력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Step.0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회사로부터 공제신고서 제출을 요청 받았거나, 예상세액 계산 또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이용하는 화면입니다.

•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된 경우 등록된 총급여액 등을 자동 반영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간편제출(온라인)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여부 조회 및 종(전)근로자의 총급여액입력은 **수정/추가입력**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총급여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공제신고서 초기화

기본사항 입력

● 기본사항

주민등록번호			소속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수정/추가입력	근무처 명칭	
세대주 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세대주 <input type="radio"/> 세대원		국적	KR 대한민국 선택
근무기간	2022-01-01 ~ 2022-12-31		거주지역	KR 대한민국 선택
거주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거주자 <input type="radio"/> 비거주자		분납신청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신청 <input type="radio"/> 미신청 ※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시 신청가능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input checked="" type="radio"/> 120% <input type="radio"/> 100% <input type="radio"/> 80% ※ 선택가능		무주택 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여 <input type="radio"/> 부 ※ 무주택 : '22.12.31.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민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전년과 동일 <input type="radio"/> 변동		총급여	60,000,000 원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면 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하면 기본사항, 부양가족, 공제항목을 수정(추가·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① ‘Step.01 기본사항 입력’탭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세대주 여부, 거주 구분 등의 기본사항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비율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120% 선택 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세액의 120%를 원천징수함
 - 분납신청여부 : 항목에서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3회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 거주구분 : 비거주자를 선택하는 경우 본인 외의 부양가족과 연금보험료 외 소득·세액 공제명세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 ② 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수정/추가입력’ 버튼 클릭 후 근무처 선택에서 ‘반영하기’를 해야 수정된 정보가 반영됩니다.
 - 종(전)사업장을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종(전)사업장 추가는 사업자번호, 총급여, 결정세액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 ③ 공제신고서를 초기화 할 때 사용합니다. 초기화가 되면 간소화자료 선택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5-1. 근무처 선택 및 수정

근무처 선택 및 추가입력 ✕

※ 근무지와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나, 맞벌이 결세안내를 이용하려면 총급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등록된 기초자료는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하니, 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현)근무지 (단위 : 원) **추가** **선택내용 삭제**

선택	근무처 사업자번호	상호	총급여	비고	연금보험료합계금액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다침완선 공어용...	42,000,000	간편제출 자료	1,830,000

· 종(전)근무지 자료 **추가** **선택내용 삭제**

선택	근무처 사업자번호	상호	총급여	결정세액	연금보험료합계금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input type="text" value=""/>	5,000,000	100,000	0

반영하기 **닫기**

- 공제신고서를 처음 작성하는 경우 「근무처 선택 및 추가입력」 팝업창이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이후부터는 Step01.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 ① 사업자등록번호 수정/추가입력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 ①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회사에서 입력한 주(현)근무지 정보가 조회되며, 주(현)근무지를 선택하면 입력된 급여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②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근무지를 신규 입력하여 주(현)근무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편제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사에서 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 정보를 입력한 경우 주(현)근무지 선택 시 하단에 종(전)근무지 자료가 조회되며, 그 외의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단, 추가 버튼을 통해 종전 근무지를 입력할 경우 **총급여와 결정세액만 입력**이 가능하며 회사로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이 필요할 경우엔 종전 근무처 정보를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통해 입력해야 합니다.
- ④ 근무처나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은 가능하나,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예상세액 계산**하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부양가족 확인(5p와 동일한 화면)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공제신고서 작성 안내 돌아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Step.01 기본사항 입력 | **Step.02 부양가족 입력** |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 Step.0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현재 조회되고 있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대상자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입니다.
· 명단에 있는 부양가족 외에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또는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눌러 개별적으로 추가하고,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 삭제할 수 있습니다.

김국세님 |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211-85-61676 연말정산 캠페인

부양가족 입력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쳐기

부양가족(인적)공제 명세 부양가족 추가 |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 선택삭제

관계	내외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	기본공제	추가공제			장애인	자녀(기본)		출산입양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유형	자녀(기본)	
<input type="checkbox"/> 소득자 본인	내국인			N	Y	N	N	N	N		N	N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의 직계존속	내국인			N	Y	N	N	Y	장애인유형이 다른		N	N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내국인			Y	N	N	N	N	N		N	N
<input type="checkbox"/>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내국인			N	Y	N	N	N	N		Y	N
<input type="checkbox"/>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내국인			N	N	N	N	N	N		Y	N
<input type="checkbox"/>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내국인			N	Y	N	N	N	N		N	셋째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Y'로 선택하시고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Step.02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있는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 관계는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에 설정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만약 자동 입력된 정보가 다른 경우 수정합니다.
-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할 수 있으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부양가족이 추가됩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과의 관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의 공제 여부는 모두 ‘N’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Y’로 선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선택하면 해당 가족의 장애인 유형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에 해당하면 기본공제를 ‘Y’로 선택하고, 기본공제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애인유형을 ‘N’으로 선택해야합니다.
- 출생·입양 공제 내역이 있을 경우 첫째, 둘째, 셋째이상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7.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화면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공제 신고서 작성 안내 돌아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Step.01 기본사항 입력

Step.02 부양가족 입력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Step.0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와 회사가 미리 제출한 '근로자 기초자료(4대보험, 일괄 기부금 등)'는 공제명세서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의 자료제 공동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 반드시 간소화자료를 다시 조회하여 공제신고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아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는 공제항목명의 [+수정] 버튼을 눌러 추가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자료는 금융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단순히 보여주지만 하므로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김국세님 | (주)

공제신고서 초기화

연말정산 헛본

+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① 소득공제 명세 (단위 : 원)

공제항목명		①간소화자료 (국세청자료)	②기타 자료 (직접수집자료)	합계(① + ②)
<input type="checkbox"/> 연금보험료공제	④ 수정	0	100,000	100,000
- 국민연금보험료		0	100,000	100,000
- 국민연금보험료외 공적연금보험료		0	0	0
<input type="checkbox"/> 특별소득공제		2,899,983	1,126,436	4,026,419
- 국민건강보험	④ 수정	0	100,000	100,000
- 고용보험		0	100,000	100,000
<input type="checkbox"/>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④ 수정	2,218,043	26,436	2,244,479
- 대출기관		2,218,043	26,436	2,244,479
- 거주자		0	0	0
- 정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④ 수정	681,940	900,000	1,581,940
개인연금저축	④ 수정	2,400,000	100,000	2,500,000
주택마련저축	④ 수정	640,000	100,000	740,000
신용카드	④ 수정	1,761,436	1,600,000	3,361,43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④ 수정	5,800,000	100,000	5,900,000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소득공제(기타)		1,700,000	900,000	2,600,000
-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④ 수정	1,700,000	100,000	1,800,000
- 투자조합출자 등	④ 수정	0	600,000	600,000
- 우리시주조합 출연금	④ 수정	0	100,000	100,000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④ 수정	0	100,000	100,000

세액감면-공제 명세

(단위 : 원)

공제항목명		①간소화자료 (국세청자료)	②기타 자료 (직접수집자료)	합계(① + ②)
연금계좌	田 수정	0	400,000	400,000
- 과학기술인공제		0	0	0
- 퇴직연금		0	200,000	200,000
- 연금저축		0	200,000	200,000
특별세액공제		9,804,710	1,500,000	11,304,710
보험료	田 수정	813,080	200,000	1,013,080
- 보장성		813,080	100,000	913,080
- 장애인전용보장성		0	100,000	100,000
의료비	田 수정	1,378,000	200,000	1,578,000
-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난임시술비		1,378,000	100,000	1,478,000
- 그 밖의 공제 대상자		0	100,000	100,000
교육비	田 수정	7,611,630	100,000	7,711,630
- 소득자 본인		1,810,590	0	1,810,590
- 취학전 아동(0명)		0	0	0
- 초·중·고등학교(3명)		5,801,040	0	5,801,040
- 대학생(대학원 불포함)(0명)		0	0	0
- 장애인(1명)		0	100,000	100,000
기부금	田 수정	2,000	1,000,000	1,002,000
- 정치자금기부금		0	0	0
- 법정기부금		0	1,000,000	1,000,000
- 우리사주기부금		0	0	0
- 지정기부금(종교외)		2,000	0	2,000
- 지정기부금(종교)		0	0	0
월세액	田 수정	0	5,000,000	5,000,000
주택차입금	田 수정	0	563,635	563,635
세액감면	田 수정			
외국납부세액	田 수정	0	3,563	3,563

이전 다음이동

- 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는 ①간소화 자료(국세청 자료)에 반영됩니다.
- 추가 수집한 자료는 각 항목별 田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명세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자료는 ②기타자료(직접 수집자료)에 반영됩니다.

8. 각 공제항목별 내역 확인 및 추가수집자료 입력

□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건강, 고용)

연금보험료공제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간소화 자료 납입금액 : 0 원 (단위 : 원)

항목	간소화(국세청)자료		회사(근로자)제출자료		추가납입금액	공제대상요건
	납입금액	차감액	주(현) 근무지	종(전) 근무지		
국민연금	-	-	1,500,000	0	500,000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로 전액공제
공무원연금	-	-	0	0	0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군인연금	-	-	0	0	0	군인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	0	0	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별정우체국 연금	-	-	0	0	0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회사가 등록된 연금보험료가 자동 반영되며,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는 간소화에서 선택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자동 반영됩니다. (간소화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도 회사 등록 자료를 우선 적용)
 *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부한 연금보험료(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 금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
반영하기 닫기

보험료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간소화 자료 금액
 * 소득월액 : 0 원, 보수월액 : 1,456,750 원 (단위 : 원)

항목	간소화(국세청)자료		회사(근로자)제출자료		추가납입금액	공제대상요건
	납입금액	차감액	주(현) 근무지	종(전) 근무지		
건강보험료	-	-	1,000,000	0	500,000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고용보험료	-	-	0	0	1,201,000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회사가 등록된 건강보험료가 자동 반영되며,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는 간소화에서 선택한 건강보험료가 자동 반영됩니다. (간소화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도 회사 등록 자료를 우선 적용)
 *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소득월액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납입금액에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2
반영하기 닫기

○ 연금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를 간소화시스템에서 선택한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등록한 금액이 우선적으로 반영됩니다.

○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금액'에 입력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연말결산간소화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차입구분	1 국세청자료	2 국세청자료 차감	3 기타	상환액 합계
대출기관	600,000	0	600,000	1,200,000
거주자	0	0	5,000,000	5,000,000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총급여 5천만원 이하만 공제 가능)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차 계약 내용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한 내용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대주(貸主)	주민등록번호	금전소비대차 계약 개시일	금전소비대차 계약 종료일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계	운
...	...	2021-04-01	2021-08-25	6	5,000,000	

- 2)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인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택 유형	주택계약 면적(㎡)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물건지)	계약서 계약기
...	...	단독주택	85	세종시	2018-10

반영하기
닫기

- ①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 ②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③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 항목에 입력합니다.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차 계약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하며,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이 상단의 거주자 항목에 반영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X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가능) 가 공제 대상입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세대주 여부, 국민주택규모, 2주택 보유 여부 등 소득공제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 이므로 하단의 공제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소득공제 받으신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관련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차입시기	상환기간-방법	한도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차감	기타자료	합계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600만원	0	0	0	0
	15년~29년	1,000만원	0	0	0	0
	30년 이상	1,500만원	0	0	0	0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 거치식	1,500만원	4,840,924	0	0	4,840,924
	15년 이상 기타	500만원	0	0	0	0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 거치식	1,800만원	0	0	0	0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 거치식	1,500만원	0	0	0	0
	15년 이상 기타	500만원	0	0	0	0
	10년 ~ 15년 고정금리 또는 비 거치식	300만원	0	0	0	0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하단의 자료를 참고하여 상환기간 등 공제 요건을 검토한 후 기타자료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에서 제출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급기관	대출종류	차입금	고정금리 차입금	비거치상환 차입금	당해년월금 상환액	최초 차입일	최종상환 예정일	상환기간	주택
장박말완차...	해당없음	160,00...	160,00...	0	0	2014-12-18	2034-12-18	20년	201

※이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합계액과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연장, 전환) 관련내용 펼치기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 항목에 입력합니다.
- 하단에는 간소화에 수록되어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자료가 조회됩니다.

- 간소화자료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며, 차입기간이 10년 미만 등의 사유로 자동 반영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공제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공제 대상인 경우 기타자료에 입력합니다.

□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개인연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요건)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공제한도 : 72만원)
※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 : 원)

선택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한	00	1,041,000	0

•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 원)

선택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새마을금고	00	1,000,000

※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 : 원)

선택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가입일자	납입금액	차감금액
<input type="checkbox"/>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국민은행		2007-07-18	240,000	0
<input type="checkbox"/>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	농협중앙회 및 산하기관		2009-06-01	400,000	0

·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 원)

선택	주택마련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가입일자	납입금액
<input type="checkbox"/>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새마을금고		2017-01-02	1,000,000

※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의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

·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사용자	소계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선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공연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김국세	국세청 자료	1,385,982,290	13,722,861	4,506,730	455,036,232	254,000	64,780	382,610
	(-)차감금액		0	0	500,000	0	0	0
합계		1,385,982,290	13,722,861	4,506,730	455,036,232	254,000	64,780	382,610

· 기타 자료 자료 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사용자	소계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선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공연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김국세	(+)기타 자료	11,037,000	9,900,000	0	0	0	0	0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사용금액과 다른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기타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법인 비용,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월세액 공제대상인 월세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금액에 차감할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차감할 경우 국세청자료 하단 차감금액란에 차감금액을 ‘-’ 부호 없이 양수로 입력합니다.
 - * 예) 현금영수증 50만원 차감시 (-)차감금액 해당 란에 500,000 입력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단,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자료만 인정됩니다.
- 도서·공연 등 사용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7천만원 초과일 경우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각각의 원래의 사용금액 항목으로 합산됩니다.
- 신용카드 등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간소화에서 해당 카드사의 자료를 선택해제하고 ‘자료추가’ 버튼을 활용하여 ‘기타자료’로 입력합니다.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간소화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였더라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자료에 반영하지 않음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 : 원)

선택	취급기관명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input type="checkbox"/>	산림조합		540,000	0
<input type="checkbox"/>	(주)제주은행		41,961	41,961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 원)

선택	취급기관명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input type="checkbox"/>	중국건설은행		2,156,140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연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반영하기
닫기

✕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 : 원)

선택	가입일	계약기간월수	취급기관명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 원)

선택	가입일	계약기간월수	취급기관명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input type="checkbox"/>	2022-10-03	36	신용협동조합		5,000,000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연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X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요약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 ·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small>※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소득세 과세 (단,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년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경우 개정 규정 적용)</small>			

· 공제 금액 (단위 : 원)

구분	납입금액	차감금액
국세청자료	3,000,000	0
기타자료	3,000,000	0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에 입력합니다.

□ 연금계좌

연금계좌
×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계좌

-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선택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	사단법인 과학기술인공제회	██████████	321,344	0
□...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중국건설은행	██████████	454,657	0

-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선택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	ISA계좌 연금구분 퇴직연금	노무라금융투자	██████████	1,651,561

※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연금저축계좌

-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선택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	연금저축-연금저축	KEB 하나은행(구. 주식회사 하나)	██████████	4,324,546	0

-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선택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	연금저축-연금저축	산림조합	██████████	561,619
□...	연금저축-연금저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하기관	██████████	432,432

※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보험료

보험료
×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보험료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는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에서 선택한 보험료 자료 중 주피보험자와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보험료 내역에 반영됩니다.

· 보험료 내역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 원)

□	피보험자	자료구분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국세청자료 차감
<input type="checkbox"/>	왕왕가	국세청자료	840,040	0	0
<input type="checkbox"/>	왕왕가	국세청자료	550,464	0	0
<input type="checkbox"/>	왕왕가	국세청자료	572,212	0	0
<input type="checkbox"/>	왕왕가	국세청자료	1,869,600	0	0
<input type="checkbox"/>	왕왕가	국세청자료	774,000	0	0
<input type="checkbox"/>	왕왕가	국세청자료	118,800	0	0
<input type="checkbox"/>	머추호	기타자료	0	1,200,000	0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 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의료비

×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 간소화서비스에서 1.20. 이후에도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타자료에 입력하고 증빙서류는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의료비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은 국세청자료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 자료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난임시술비를 국세청차감액에 입력하여 차감한 후 기타자료에 입력하시고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원)

대상자	의료증빙코드	공제대상	공제항목	상호	건수	지출액	국세청차감액
왕왕가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	본인	일반의료비	양자***	1	4,500	0
왕왕가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	본인	안경구입비	판도****	1	545,100	0

※ 안경구입비는 인별 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출급여 7천만원 이하)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초과 출산의 경우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원)

대상자	의료증빙코드	공제대상	공제항목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건수	지출액
왕왕가	기타 의료비 영	본인	일반의료비	확민	(기) 너함...	1	100,000

일반의료비
 난임시술비
 안경구입비
 산후조리원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실손의료비 차감액(공제제외금액)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차감액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제공동의를 받은 부양가족이라도 본인만 조회

기본공제대상자	실손의료보험금		
	국세청 자료 금액	국세청 자료 차감액	기타 자료 금액
	0	0	0

(단위:원)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지출액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이 있는 경우 '국세청차감액'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에 '자료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에 난임시술비 또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가 포함된 경우 국세청자료에서 차감한 후 기타 자료에 공제항목을 난임시술비/미숙아선천성이상아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 사생활 보호등 사유로 난임시술비 등을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지 않음
- 간소화자료에 50만원을 초과하는 안경구입비가 있을 경우,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해야 하며, 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2백만원까지 입력합니다. * 2회의 출산은 회사에서 처리 가능
- 간소화에서 선택한 실손의료보험금은 국세청 자료금액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입력하시려면 부양가족별로 기타자료금액에 입력합니다.

□ 교육비

교육비
×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교육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추가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는 회사로 제출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교육비 지출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재학 중인 학교 등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	피교육자	자료구분	공제종류	공납금	공납금 차감액	교복구입비	교복구입비 차감액	체험학습비	체험학습비 차감액
<input type="checkbox"/>	마차티	국세청 자료	초,중,고등학교	432,457	0	0	0	0	0
<input type="checkbox"/>	마차티	기타 자료	초,중,고등학교	0	0	300,000	0	200,000	0

※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에 한해 인별 50만원 한도)와 현장체험학습비(초중고등학생에 한해 인별 30만원 한도)를 포함하여 교육비 한도를 계산합니다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 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공납금 차감액’ 또는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에서 교복 구입비와 체험학습비가 공제한도(교복 구입비 50만원, 체험학습비 30만원)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차감액을 입력해야합니다.

□ 기부금

✕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기부금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기부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추가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는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기부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연도 기부 명세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	자료구분	기부코드	기부내용	기부자	기부처		상호(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확인	
<input type="checkbox"/>	국세청 자료	법정기부금	금전	성명바꾸지마	307-07-	확인	해충약중
<input type="checkbox"/>	국세청 자료	종교단체 외 지	금전	성명바꾸지마	307-07-	확인	해충약중
<input type="checkbox"/>	국세청 자료	종교단체 지정	금전	성명바꾸지마	307-07-	확인	해충약중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료	---선택---	금전	---선택---		확인	

기부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단위: 원)

기부종류	기부자 구분						
	합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외
합계	210,000	210,000	0	0	0	0	0
법정기부금	60,000	60,000	0	0	0	0	0
종교단체 지정...	80,000	80,000	0	0	0	0	0
종교단체 외자...	70,000	70,000	0	0	0	0	0

기부금 조정 명세 이월분 입력 이월분 조회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	기부금 코드	기부연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
<input type="checkbox"/>	법정기부금	2017	60,000	0	60,000
<input type="checkbox"/>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	2017	70,000	0	70,000
<input type="checkbox"/>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2017	80,000	0	80,000
<input type="checkbox"/>	---선택---		0	0	0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자료는 자료구분을 ‘국세청자료’로, 회사에서 등록한 회사 일괄 기부금 자료는 ‘회사 자료’로 미리 채워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기부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와 기부금 조정 명세는 자동 계산됩니다.
-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분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에 입력합니다.
- 이월기부금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이월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월세액
✕

• 공제대상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세액공제금액 :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 × 15%

※ 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 × 17%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 : m, 원)

□	임대인성명 (상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택유형 코드	주택계약 면적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물건지)	계약개시일	계약종
□	한국토지...	██████████	단독주택	105	██████████	2020-09-01	2021-C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 m, 원)

□	임대인성명 (상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택유형 코드	주택계약 면적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물건지)	계약개시일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확인	--선택--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작성한 내용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세액감면

기타세액공제 및 감면
×

기타세액공제 작성방법 펼쳐기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단위 : 원)

항목	이자상환액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12,000

· 세액감면 (단위 : 원)

	입국목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부간협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input type="checkbox"/> 조세조약상감면			
외국인 근로자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2021-08-02	감면기간 만료일	2021-10-29	감면세액 (50%)	0	
					감면세액 (70%)	0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접수일	2021-02-01	제출일	2021-03-02	감면세액	5,000,000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감면세액	0

· 조특법(중소기업) (단위 : 원)

	취업일(감면기간 시작일)	2021-04-05	감면기간 종료일	2021-12-31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감면대상금액 (100%)	0	감면대상금액 (50%)	0
	감면대상금액 (70%)	0	감면대상금액 (90%)	100,000

※ 감면대상 금액은 회사가 입력한 금액 단순 확인용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조특법(기타) (단위 : 원)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감면	경영성과급 지급금액 (50%)	100,000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	중견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30%)	0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50%)	0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지급금액 (50%)	0

· 외국납부세액공제 (단위 : 원)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원화)	0		
	납세액(외화)	0		
	납세액(원화)	0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 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반영하기
닫기

- 중소기업취업자감면과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은 회사가 입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6p와 동일한 화면)

편리한 연말정산
처음화면 돌아가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근로자 접수안내

👉 간편제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공제신고서 작성
안내 돌아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Step.01
기본사항 입력

Step.02
부양가족 입력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Step.0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의 지출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2021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2020.12.31. 이전 지출한 의료비 해당분이 포함된 경우 실손의료보험금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수정 가능)
- 소득·세액공제액은 「예상세액 결과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완료한 공제신고서를 종이로 출력 또는 PDF로 내려받아 제출하거나, 회사가 근로자 기초 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제출(간편제출하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여부는 [step.01 기본사항 입력]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버튼을 눌러 확인 가능합니다.)

김국세님 | (주) 현대... (주) 현대... (주) 현대...

설문조사 가기
간편제출하기
연말정산 쉼표

기타서류 첨부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공제신고서 출력
예상세액 결과보기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공제
신고서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의료비
지급명세

기부금
명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기본사항

소득자 성명	김국세	주민등록번호	[REDACTED]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대주 [<input type="checkbox"/>] 세대원	국적	대한민국(국적코드 : KR)
근무기간	2021.01.01 ~ 2021.12.31	감면기간	
거주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거주자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	거주지국	대한민국(거주지코드 : KR)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년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변동	분납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input type="checkbox"/>] 120%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 [<input type="checkbox"/>] 80%		

①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내용과 부속명세서를 선택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 지출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시 Step03으로 이동하여 지출 금액을 수정합니다.

② ‘간편제출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간편제출은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회수하면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를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출력’을 선택합니다.

③ ‘예상세액 결과보기’는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계산한 예상세액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9-1. 기타서류 첨부하기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Step.01 부양가족 입력 Step.02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작성 완료한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의 지출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공제항목은 추가하거나 새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2021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2020.12.31. 이전 지출한 의료비 해당분이 포함된 경우 실손의료보험금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수정 가능)
- 소득·세액 공제액은 「예상세액 결과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완료한 공제신고서는 종이로 출력 또는 PDF로 내려받아 제출하거나, 회사가 근로자 기초 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제출(간편제출하기)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공제 신고서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	월세액·거주기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의료비 지급명세	기부금 명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	----------------------	----------	--------	-----------------

기본사항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input type="checkbox"/> 세대주 <input type="checkbox"/> 세대원	국적	대한민국(국적코드 : KR)
근무기간	2021.01.01 ~ 2021.12.31	감면기간	
거주구분	<input type="checkbox"/> 거주자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	거주지국	대한민국(거주지코드 : KR)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input type="checkbox"/> 전년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변동	분납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input type="checkbox"/> 120% <input type="checkbox"/> 100% <input type="checkbox"/> 80%		

- ① 간소화 자료 외에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회사에 수동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기타서류 첨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기타서류 등록

- 첨부가능 파일형식 : PDF 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 기타서류는 10개까지 업로드 가능(총 크기 50 MB 이하)하며, 한번에 업로드 가능한 파일은 최대 5개입니다.

파일 내역

번호	파일명	파일크기	등록일시	파일 내려받기	관리
1	편리한 연말정산 기타서류 업로드 - Internet Explorer				

파일 업로드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5 개 25 MB 제한 0 개, 0 byte 추가됨

② 파일선택을 클릭하여 팝업에서 ‘파일찾기’를 클릭해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한 후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기타서류 등록 ✕

• 첨부가능 파일형식 : PDF 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 기타서류는 **10개까지 업로드 가능(총 크기 50 MB 이하)**하며, 한번에 업로드 가능한 파일은 **최대 5개**입니다.

파일 내역

번호	파일명	파일크기	등록일시	한번에 내려받기	파일선택
1	(김국세)-이미지 1.png	157.96 KB	2021-12-15 15:50:5	내려받기	삭제
2	(김국세)-이미지 2.png	32.88 KB	2021-12-15 15:50:5	내려받기	삭제
3	(김국세)-이미지 3.png	17.78 KB	2021-12-15 15:50:5	내려받기	삭제
4	(김국세)-이미지 4.png	18.64 KB	2021-12-15 15:50:5	내려받기	삭제

닫기

- ③ 업로드한 파일을 확인하여 추가업로드하거나 삭제합니다.
- 파일명은 [(납세자성명)-파일이름]의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 업로드한 파일은 각각 내려 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사용해 압축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업로드한 파일을 제출하고 싶지 않으면 공제신고서 제출 전 ‘삭제’버튼을 클릭해 파일내역에서 삭제합니다.
 - 자료첨부는 10건까지 가능하며 1건당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④ 첨부한 파일은 공제신고서 간편제출 시 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됩니다.

9-2. 간편제출하기

-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하기 팝업이 뜹니다.
-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제출 동의를 클릭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제신고서가 온라인으로 제출됩니다.
- 회수 및 이력보기는 [조회/발급-편리한연말정산 바로가기-제출하기-회수 및 제출이력]을 클릭합니다.